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60호

2015년 10월 8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127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4
○ 조 례 제127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조 례 제127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조 례 제128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조 례 제12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조 례 제12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조 례 제128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조 례 제128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조 례 제128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감및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조 례 제12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무과	33
○ 조 례 제12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조 례 제128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40
○ 조 례 제12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조 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 조 례 제129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 조 례 제129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 조 례 제12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 조 례 제129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 조 례 제129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 조 례 제129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 조 례 제12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63
○ 조 례 제129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7
○ 조 례 제129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60호

2015년 10월 8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130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동위원 및 이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80
○ 조 례 제130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86
○ 조 례 제130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 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 조 례 제130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 조 례 제130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 조 례 제130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차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05
○ 조 례 제130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규 칙

○ 규 칙 제 8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0
○ 규 칙 제 89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26

훈 령

○ 훈 령 제 3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133
--------------	------------------------------	-----

예 규

○ 예 규 제 74호	인천광역시남동구하차검사및보수에관한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	145
-------------	-------------------------------	-----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60호

2015년 10월 8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5- 1507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 연락골지구 소3-2호선] 사업 147
보상계획 열람 공고
- 공고 제2015- 1512호 소래제2공영주차장 급지변경 고시 152
- 공고 제2015- 1533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인천 도시철도 2호선 153
215공구 및 216공구)
- 공고 제2015- 1535호 공영주차장 급지 선정 및 유료화 공고 154
- 공고 제2015- 1539호 보상협의 안내 공시송달(소래지구 중2-110호선) 155
- 의 회 사 무 국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소집공고 156
공고 제2015- 29호
- 의 회 사 무 국 인천광역시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57
공고 제2015- 30호
- 남 동 구 보 건 소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작면말소 예정 공사송달 공고 167
공고 제2015- 63호
- 남 동 구 보 건 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작면말소 예정 공사송달 공고 168
공고 제2015- 64호
- 남 동 구 보 건 소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작면말소 예정 공사송달 공고 169
공고 제2015- 66호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7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주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지역주민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 자치분권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제7조의 협의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제3조)
- 자치분권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
-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 등 (제6조~제13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7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과장·지소장”을 “과장·센터장”으로 한다.

제4조의3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비상대책 수립

제4조의5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언론 정례 브리핑 및 기획보도계획 수립

3. 구보 및 남동구 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언론 및 소셜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건지소”를 “건강관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지소”를 “건강관리센터”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지소장”을 “건강관리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 및 건강관리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건강관리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41번길 18	간석1·2·3·4동, 만수2·3동

[별표 1의2]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7	남촌동 605~648번지 논현동 423번지 논현동 427~440번지 논현동 442번지 논현동 442-1~3번지 논현동 442-73번지 논현동 442-82번지 논현동 443~451번지 논현동 453~454번지 논현동 470~471번지 논현동 473번지 고잔동 625~806번지
남동다문화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민선6기 구민중심 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다문화사업소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존 간석보건지소의 센터로의 지위 전환, 남동공단지원사업소의 관할지번 현행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함.

□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조 정 후	증 감
구 본 청	4국 4실 1단 26과	4국 4실 1단 26과	—
의회사무국	1국	1국	—
직 속 기 관	3과 1지소	3과 1센터	증)1센터 감)1지소
사 업 소	1사업소	2사업소	증)1사업소
동	19동	19동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7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948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45	-				
	2급	1	1				
	4급	6	4	1	1		
	5급	62	32	2	7	2	19
	6급 이하 계	876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	-				
	6급 상당 이하 계	2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5년 하반기 사업소 신설에 따라 5급 정원을 증원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일반임기제 5급을 감원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948명(별표3)
 - 집행기관 : 928명(5급 : 본청 -1, 사업소 +1)
 - 의 회 : 20명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8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1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구청장 (총무과)	1.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가. 별정직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2.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별표 2-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임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남동다문 화사업소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남동다문 화사업소
구청장 (세무1과)	1.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다.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확인원 발급 2.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서 접수처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지방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세무1과) (세무2과)	1. 지방세(납세·독촉·체납)고지서 발급	「지방세법」 제55조,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21조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복지정 책과)	1. 다문화가족 관리 및 지원 가. 다문화가족 지원 종합계획 수립 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관리 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도감독 라.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일반 2. 거주외국인 지원 및 민원사무 가. 거주외국인 지원계획 수립 나.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다. 외국인사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거주외국인 지원 및 일반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13조, 제14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같은 조례 제5조, 제6조	남동다문 화사업소

위임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구청장 (복지정 책과)	3.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계획 수립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일반 다. 남동겨레하나센터 지도감독 4.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계획 수립 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및 일반 다. 남동사할린센터 운영 관리 5. 결혼중개업 관리 및 운영지도 가. 결혼중개업 신고 및 변경신고 나. 결혼중개업 지도감독(행정처분) 다. 결혼중개업 일반 및 관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 주민 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1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 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같은 법률 제4조의 3 같은 법률 제2조의 2	남동다문 화사업소
구청장 (가정복 지과)	1. 건강가정지원 사업 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지원 나. 아이돌보미 운영지원 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지원 라.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운영지원 마.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도점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1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같은 조례 제1조, 제14조	남동다문 화사업소
구청장 (청소과)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무 2.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무 3.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환경 보전과)	1.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관련 규정에 의하여 권한위임된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업무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라. 기술관리인 선임신고 등의 수리 마. 오염피해 발생 등에 따른 보고·검사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7조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하수도법」 제40조 및 제76조 내지 제80조 「하수도법」 제66조 「하수도법」 제69조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위임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2. 악취배출시설 신고(변경) 사무 3.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변경) 사무 4. 특정공사사전신고(변경) 사무	「악취방지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구청장 (건설과)	1. 도로의 공사와 유지관리	「도로법」 제23조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건축과)	1. 연면적 1,000㎡이하인 건축행위에 관 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허가(신축증축대수선·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 포함) 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 2. 건축신고(착공 및 사용승인 포함)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 나. 건축신고 공작물축조신고 다. 용도변경 신고(표시변경 포함) 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 및 존치 기간 연장 3. 위반건축물 조사, 관리 4. 건축물 대장관리	「건축법」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 「건축법」 제36조 「건축법」 제14조, 제83조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제78조, 제79조, 「건축법」 제38조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도시 경관과)	1.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2. 불법유동광고물 설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봉사단체 운영 4.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업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 조 및 제10조의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 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조례」 제22조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구청장 (공원 녹지과)	1.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가.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 2.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가. 가로수 유지관리 3. 공원녹지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천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3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 장도 발급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제30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구청장 (노인장 애포과)	1.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2.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처리 3.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진단사항 확인 4.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청소과)	1.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구청장 (도시 경관과)	1.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2.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봉사단체 운영 4.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업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 조 및 제10조의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 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15년 하반기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따라 업무이관, 사무 위임, 사무조정 등을 통해 업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신속히 보완코자 함.

□ 주요내용

- 관계법령 개정 및 사무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변경·삭제
 -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별표 2-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부 신설·삭제
 -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부 신설·삭제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2호 중 “남동소래아트홀 유지관리사업”을 “남동소래아트홀 관리·운영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 “공공문화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7호,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구립도서관 관리·운영사업
- 18. 소래역사관 관리·운영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위탁사업의 범위를 시설별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공공문화시설 유지관리사업”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
- 남동소래아트홀 · 구립도서관 · 소래역사관의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사업 명 수정·삭제 및 신설(제23조)
 - 12. 남동소래아트홀 유지관리사업 → 남동소래아트홀 관리·운영사업
 - 13. 공공문화시설 유지관리사업 → 삭제
 - 17. 구립도서관 관리·운영사업(신설)
 - 18. 소래역사관 관리·운영사업(신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청장은 통장에게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통장의 대민 역할 강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장 사기진작 근거 마련(제13조)
 -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8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재학증명서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선발일 현재 해당 학교에 재학생임이 확인되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서식)

접수번호 : []

20 년(하 · 동계) 부업대학생 신청서

신	성	한글		생년월일	
	명	한자			연 락 처
청 인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TEL H · P
	세 대 주 성 명			세대주와의 관 계	
	학 교 명			학부 또는 학 과	
	남 동 구 부업경력	년(하계 · 동계)		근무부서 (실,과,소,동)	

상기와 같이 부업대학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장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 년(하 · 동절기) 부업대학생 신청 접수증

성 명		생년월일	
학교 및 학과 학년			접수번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라 자치법규의 재학증명서 제출사항을 재학조회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학증명서 제출 삭제(제6조)
- 별지서식 재학증명서 제출사항 삭제(별지 제1호 서식)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8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시민단체대표”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대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및 법 제13조제2항”을 “,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과 용어를 올바르게 정비하여 주민투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 조문 반영 (제4조)
 -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 제4조의2제4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촉 위원 명확화(제12조제4항제3호)
 - 시민단체대표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대표
- 「주민투표법」 인용 조문 추가 반영 (제16조)
 -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 조문 추가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8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타전산정보처리조직”을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띄어쓰기
- 주민등록법 개정 조문 변경 (제1조)
 - 주민등록법 제20조 ---> 제36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2회에 한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잔여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를 “사항의 심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을 “심의를 함에 있어”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한다.

제7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각각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요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심의회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그 심의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한”을 “심의”로 한다.

제9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억원 이하”를 “20억원 이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참여감독제 대상공사에 대해 상한금액을 높여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운영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 연임 횟수 제한(제3조제2항)
- 위원회 자문 기능 삭제(제4조, 제5조제1항및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0조제2항)
- 주민참여감독제 대상공사의 상한금액 상향 조정(제12조제1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증감한 때”를 “증감한 경우”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경우

제25조제2항제1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상시”를 “평상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세율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조문 정비(제5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적용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8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을 “할 때에는 기한 만료일 3일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제10조 전단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임차인이”를 “법 제6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배분금전의 예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 등)”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배분”을 “교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탁한 때”를 “예탁한 경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충당하는 때”를 “충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영 제8조의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

제2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제4장(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 부담을 완화시키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 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5조)
 - 일반우편, 공탁영수증, 교부금전, 등록확인증 등
- 기한연장 신청기한 연장 : 기한만료일 → 기한만료 3일전 (제8조)
- 미납구세에 대한 열람신청자 범위 임차인으로 한정 (제14조)
- 징수유예 취소시 일시에 징수하는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정비 (제23조)
-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시 담보제공 예외사유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를 포함하여 납세자의 금전부담 완화 (제24조)
- 체납처분 중지시 공고기간 연장 : 10일 → 1개월(제39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제4장 부칙(지방세심의위원회 삭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기본법」 제10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당해직급”을 “해당 직급”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부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를 “제1항제1호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4조의 규정”을 “제24조”로, “제43조의 규정”을 “제4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3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후단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 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제1항제1호 내지”를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제1항제1호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기타 제1호 내지”를 “그 밖에 제1호부터”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본문 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세기본법」 제105조에 따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권리현장 등에 대한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이관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 정비
 - 지방세법 제71조의2 →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제1조)
 - 지방세법 제72조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20조)
 - 지방세법 제65조 →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제41조제1항)
 -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2조, 제14조)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아트홀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트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 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남동소래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소래아트홀 관리 운영 위탁 근거 조항 신설(제20조)
- 위탁의 취소 조항 신설(제20조의2)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91호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소래역사관”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래역사관”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연휴”를 “당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래역사관 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되고”를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역사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역사관 업무담당 부서장과”를 “위촉직 위원은”으로, “인사를”을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1회”를 “3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잔여”를 “남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다목적시청각실과 야외공연시설”을 “영상실”로 한다.

제3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래역사관”을 “역사관”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을 “(손해배상)”으로 하고, 제45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소래역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탁 범위 등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역사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휴관일 조정(명절 연휴 → 당일) : 제5조
- 위원회 구성과 임기 조정 : 제12조
- 대관허가 시설 범위 조정(영상실) : 제29조
- 관리 운영의 위탁 범위 조정 : 제37조
- 상위법에 근거없는 수탁자의 보험가입의무 삭제 : 제45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9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등록취소를 조례에 규정함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지적되어,
-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지방규제를 개선하고 남동구 자원봉사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센터 등록 의무조항을 당사자의 선택조항으로 개정 (제8조제6항)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구청장이 조건에 따라 「등록취소」하는 조항 삭제((제14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15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입법기준 및 상위법령과 불합치한 규정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준용대상 법규중 중복법규 및 규칙 등 개정 (제23조)

- 사무위임 및 위탁에 대한 2개의 준용 법규는 중복되므로, 상위법규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
- 조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각각 추가하여 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삭제하고,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르도록 개정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9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5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입법기준 및 상위법령과 불합치한 규정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제처 개선안에 따라 준용대상 법규 중 하위법령 준용사항 개정 (제19조)
 - 제19조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법제처 권고에 따라
 -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9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5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입법기준 및 상위법령과 불합치한 규정에 대하여 개정하여 구조례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제처 개선안에 따라 준용대상 법규 중 하위법령 준용사항 개정 (제13조)
 - 제13조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법제처 권고에 따라
 -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9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5월21일”을 “5월20일”로, “1주간을 “다문화주간””을 “1주

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문화”를 “세계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15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입법기준 및 상위법령과 불합치한 규정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함
- “세계인의 날”을 관련법령에 맞추어 지정 운영함

□ 주요내용

- 관련 법령에 따라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주간을 반영 (제14조제1항, 제2항)
 - 남동구 세계인의 날 : ‘매년 5월 21일’-> ‘매년 5월 20일’
 - ‘다문화주간’ -> ‘세계인주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 법제 용어사용 기준에 맞춤
 - 기타⇒그 밖에 / 대하여⇒대해서 / 규정에 의하여⇒에 따라
- 법규명 띄어쓰기 적용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물”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3.“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

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공사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8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 (제1조, 제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책무 명시 (제3조, 제4조)
-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촉진계획 수립 명시 (제5조, 제6조)
- 우선구매 촉진 및 계약 방법 명기 (제7조)
-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 평가 및 포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9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련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원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9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성인지 예산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직 참여)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모·부성의 권리보장)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교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 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성차별의 금지) ①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다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양성 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4장 양성평등위원회

제23조(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심의 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 종사자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단체 대표

제26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양성평등기금

제34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폭력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4. 그 밖에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등 구청장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 자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 14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제36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 본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15.7.1.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1조부터 제6조)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예산·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부터 제8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성차별의 금지,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 양성평등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부터 제22조)
-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23조부터 제33조)
- 양성평등기금의 설치·용도·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34조부터 제41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29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 중 “아동·여성보호”를 “아동·여성안전”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제반사업”을 “모든사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여성 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7.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8. 사회복지시설
9.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역연대”를 “위원회”로, “2회”를 “1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연대”를 “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지역연대”를 “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여성·아동 안전망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및 목적의 관련 법령 변경 (제1조)
 - 제명: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명칭, 구성인원, 임기 및 회의 개최수 정비 (제7조 및 제9조)
 - 위원회 명칭: 지역연대 →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 구성인원: 17명부터 25명까지의 위원 → **9명 이상**의 위원
 - 임기 제한 : 2회에 한하여 연임
 - 회의 개최수: 연 2회 → 연 1회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30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2장 아동위원

제3조(아동위원의 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각 동 주민센터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②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에 알림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등
-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8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의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2.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 3.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4.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 1.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7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 활동 중인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남동구 아동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아동복지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각종 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아동복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 아동위원 구성, 임기, 역할 등에 관한 사항(제3조~제7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위원촉에 관한 사항
(제8조 ~ 제11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회의,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제12조~제15조)
- 자료제출, 우선조치, 비밀누설 금지, 운영세칙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30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지역구조 전환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인증된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6.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7.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조사, 시민 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국가 에너지정책 및 인천광역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라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 노력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학교·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

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의 요청 시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시민단체·학교 및 관련연구기관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에너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주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

1.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
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30일 전까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1. 에너지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2.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을, 서기는 에너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부문별 에너지시책

제14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구입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및 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17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프

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이용 촉진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구민·공공기관·단체 등에게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사업자·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날로 심화되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등 에너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이며 창의적인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기본방향, 용어 정의 (제1조~제3조)
- 에너지이용 주체별(구청장, 사업자, 구민)책무 (제4조~제6조)
-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13조)
- 부문별(공공·산업·건물·수송부문)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7조)
- 에너지이용 촉진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30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남동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
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 제14조제1항의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제한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조건 등의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함 (제14조제5항제2호, 제15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30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 1인과 20인”을 “성별을 고려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을 “당연직 위원은”으로,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을 “위촉직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 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합”을 “회의를 총괄”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하되”를 “하되 2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명확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인원 및 회의 의결에 대한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인원 정비 (제4조)
 -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
- 위원 임기 연임 횟수 2회로 정비(제6조)
-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 결정권이 주어진 단서조항 삭제(제8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30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폐기물봉투의 규격 · 용도 및 가격(제14조 제6항 관련)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cm) (쓰레기를 담는부분)	가 격 (원)	용 도
3	22 × 26	90	일반용 봉투
5	26 × 31	210	일반용 봉투
10	33 × 40	390	일반용 봉투
10	36 × 36	390	재사용 봉투
20	41 × 49	750	일반용 봉투
20	45 × 45	750	재사용 봉투
30	58 × 46.5	930	재사용 봉투
50	56 × 67	1,850	공공용 봉투, 일반용 봉투
100	71 × 85	3,710	공공용 봉투, 일반용 봉투
30 (12kg)	48 × 57	2,350	가정사업계용 봉투
60 (24kg)	60 × 69	4,700	가정사업계용 봉투
125 (50kg)	80 × 90	7,870	가정사업계용 봉투

주) 끈 삽입형 봉투규격 계산식

※ 근거 : 한국플라스틱 표준

1) 봉투의 너비 : 기존 봉투 규격기준 적용

2) 봉투의 길이 : $[(\text{반지름}(r) \times \text{반지름}(r) \times \pi) \div \text{봉투용량}] + \text{지름}(d)$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제 호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신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영업사항	상 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영업형태	1.담배가게() 2. 아파트 노인회() 3.기타(동 추천장소) ()
------	---

※ 해당란에 O표하고 영업형태를 자세히 기재

점포규모	m ²	소유현황	1.자가() 2. 임대()
------	----------------	------	---

【 약 도 】

위와 같이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년 일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변경신고서

신청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지 정 번 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변 경 하 고 자 하는사항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주 소	
	변 경 사 유			

인천광역시 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판매소 위치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폐업·휴업】 신고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지정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유				
휴업일 경우의 휴업기간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를 폐업·휴업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과태료처분 내 역	④고지일자		⑥과 태 료 금 액	
	⑤부과기간		⑦이의제기 일 자	

- 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01년 이후 일반용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이 없어 청소분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반용(재사용) 봉투가격 인상안 적용
 - [별표3] 폐기물봉투의 규격·용도 및 가격

용량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인상 가격	210원	390원	750원	1,850원	3,710원
인상액	50원	80원	130원	310원	640원
현행 가격	160원	310원	620원	1,540원	3,070원
인상률	31.2%	25.8%	20.9%	20.1%	20.8%

가격인상 (2015.10.1)	현행	⇒	인상 리터당 38원 (평균)
	리터당 31원 (평균)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30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노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를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을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을 “발생하였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의 규정을”을 “제6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한다.

제10조 중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한다”를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을 준용하고,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치매관리법」이 제정(2011.8.4.)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하위규정 인용 규정을 정비하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련법령 삭제 및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 법령 개정 (제1조)
- 하위규정 인용조문 정비(제10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30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을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에 따라”를 “구청장은”으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제6조제3항 중 “시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를 인용한 내용을 삭제하고,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자살예방 추진계획”으로 개정하여 자살예방사업의 수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맞지않은 인용 내용 삭제 (제5조)
-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자살예방 추진계획”으로 개정(제5조, 제6조)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규칙 제8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하부조직) 중 “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11조(사무분장)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간석보건지소의 분장사무는 [별표2] 와 같다”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간석건강관리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2] 와 같다”로 한다.

제12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

로 보하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으로 보한다“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2-1,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본청의사무분장표(제8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 전 총 괄 실	1.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2.	안전문화·의식 진흥 정책에 관한 사무(주민 안전 교육 및 홍보)
	3.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4.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5.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6.	주민안전정책 총괄
	7.	재난관리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8.	전시 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9.	재난안전관리업무 실태평가 업무 총괄
	10.	재난 공시에 관한 사무
	11.	기타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12.	특사경 지원 및 업무 총괄
	13.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운영
	14.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상황판단회의
	15.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총괄
	16.	재난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7.	자연재난 총괄복구계획 추진
	18.	재해구호 총괄계획 수립
	19.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풍수해, 지진, 폭염, 가뭄, 폭설, 한파, 풍랑)
	20.	재해예방 경감사업 추진
	2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추진
	22.	지진피해저감사업(지진가속도계측기, 위험도평가단) 추진
	2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2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관리 및 해소방안 수립에 관한 사무
	25.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26.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
	27.	풍수해보험 운영에 관한 사무
	28.	자연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 전시
	29.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30.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
	31.	방재물자 관리

32.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3.	해수침투방지용 수문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4.	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35.	4대악 범죄 예방사업 총괄
36.	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37.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총괄관리
3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사무
39.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지원 총괄
40.	재난대비 교육·훈련 총괄
41.	지역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무
42.	특정관리대상시설 총괄계획 수립
43.	초고층 및 지하연계건축물 안전관리
44.	안전점검모니터 운영 및 관리
45.	안전점검의 날 운영
46.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47.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48.	각종 민원(방범, 어린이범죄예방 등)처리 및 CCTV 설치장소 선정
49.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50.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구축·운영 종합 계획 수립
51.	재난안전 통합관제 운영체계 도입 및 시행
52.	확장서비스(u-Service) 및 지능형서비스 개발·도입
53.	CCTV 통합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54.	CCTV 관련 부서·유관기관(학교, 경찰) 업무협의 및 협약 추진
55.	관제인력 채용 및 관리
56.	통합관제센터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57.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사무
58.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59.	사회복무요원 관리
60.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
61.	충무계획의 총괄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62.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63.	민방위훈련, 교육의 계획수립 및 시행
64.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자원관리
65.	직장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관리

	66.	주민신고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무
	67.	민방위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무
	68.	민방위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69.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 장비에 관한 사무
	70.	기타 민방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71.	전시 병무에 관한 사무
	72.	사회안전 예방활동 지원
	73.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홍보 미디어실	1.	홍보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2.	각종 시책의 홍보 등에 관한 사무
	3.	구정 활동 홍보 등에 관한 사무
	4.	각종 언론매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5.	구정 현황 소개(영상, 슬라이드 등 제작)
	6.	구정 기록에 관한 사무(사진, 영상)
	7.	구정 홍보판 관리 및 홍보용 사진제작 배포
	8.	구보 발간에 관한 사무
	9.	남동구 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무
	10.	U-City 관련 사업 총괄
	11.	방송통신융합서비스(IPTV 등) 발굴 및 확산
	12.	스마트워크센터 시범 구축에 관한 사무
	13.	모바일 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무
	14.	소셜 미디어 운영 사무
	15.	스마트 워크 추진 사무
	16.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
	17.	정보화 사업 법제도에 관한 사무
	18.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19.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 및 관리
	2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
	21.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예산심의에 관한 사무
	22.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중복개발) 조정
	23.	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
	24.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무
	25.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무
	26.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및 관리
	27.	행정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28.	행정정보와 공간정보간 연계활용

	29.	웹서비스(홈페이지, 웹솔루션 등) 운영 관리
	30.	행정정보(지킴이시스템, 백업시스템 등) 운영 관리
	31.	행정정보망(내부, 외부망) 운영 관리
	32.	정보시스템실 및 컴퓨터 교육장 운영 관리
	33.	IP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34.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35.	행정정보화 전산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6.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7.	지역정보화 및 정보격차해소 추진에 관한 사무
	38.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리
	39.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 및 문서유통에 관한 사무
	40.	공공데이터개방에 관한 사무
	41.	공공아이핀 및 행정전자서명에 관한 사무
	42.	공공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해소에 관한 사무
	43.	정부원격근무지원에 관한 사무
	44.	행정전화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45.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시설 개발 및 관리
	46.	국가정보통신망, 통신회선 등의 통합 관리
	47.	인터넷전화 시스템 및 모사전송기, IP 동보방송시설 운영 관리
	48.	정보통신보안
	49.	인터넷 방송시설 운영 관리
	50.	정보통신에 관한 주택건설 승인 협의
	51.	데이터 통신장비 운영 및 회선 관리
	52.	정보통신기술 교육에 관한 사무
	53.	무선국 운영에 관한 사무
	54.	기타 행정 통신에 관한 사무
	55.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업무
	56.	건축물 착공전 정보통신설계도서 검토 승인
총 무 과	1.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2.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4.	시·구민의 날 행사 종합계획 수립 업무
	5.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무
	6.	공무원의 관외출장 통제
	7.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운영관리
	8.	직장보육시설 관리 운영

9.	자체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 운영관리
10.	구청사 방호 및 시설의 이용·배치에 관한 사항
11.	의식 행사 의전 접대에 관한 사항
12.	민간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표창
13.	공무원 건강진단 및 복리후생
14.	공무원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관한 사항
15.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16.	공무원의 인사관리
17.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
18.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
19.	공무원 교육 및 피교육자 차출
20.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21.	공무원증 발급 및 신원조사 의뢰
22.	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23.	공무원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24.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무
25.	공무원 고충심사 처리 및 상담해결
26.	상시학습실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7.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28.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9.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및 지도감독
30.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31.	동 기능 전환 관련업무 총괄
32.	기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동의 명칭 및 위치·구역의 변경
34.	통·반조직의 승인조정 및 관리
35.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보 제작
36.	지방행정동향 및 각종 여론관리
37.	기관행사 및 회의의 조정통제
38.	확대간부회의 운영관리
39.	적십자회비 모금운동 및 회비 수납지원
40.	동 행정의 종합관리 및 실적평가
41.	아르바이트대학생 관리
42.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지도
43.	생활공감정책 지원 및 관리
44.	마을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45.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46.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7.	기타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무
	48.	주민등록 관리 및 주민전산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49.	주민등록 및 외국인 인구 통계에 관한 사무
	50.	주민등록증 관리 및 주민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
	51.	인감및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관한사무
	52.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53.	행정사 등록에 관한 사무
	54.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사무
	55.	새마을금고인가 및 지도관리
	56.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57.	한국자유총연맹 등 타 과에 속하지 않은 사회단체 관리
	5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운영
	59.	환경순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60.	직장협의회 운영 및 공무원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1.	직원복지회 운영 관리
	62.	일제강점하강제동원및과거사정리,6·25전쟁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등에 관한 사무
	63.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관리
복 지 정 책 과	1.	남동구 사회복지사무 조정·통계 등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2.	호국보훈 및 의사상자에 관한 사무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4.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무
	5.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6.	남동복지관 관리에 관한 사무
	7.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조정·시행·평가에 관한 사무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관한사무
	9.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망 관리에 관한 사무
	11.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12.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무
	13.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14.	이웃돕기에 관한 사무
	15.	복지사각지대 관리에 관한 사무
	16.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무
	17.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18.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19.	방문형 서비스 사업 협력연계 운영에 관한 사무
	20.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무
	21.	그 밖에 주민생활국 사무의 총괄 및 지원
가 정 복 지 과	1.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
	2.	여성의 사회·문화교육에 관한 사무
	3.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무
	4.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가족친화 인증에 관한 사무
	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6.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
	7.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방지에 관한 사무
	8.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무
	9.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무
	10.	성폭력·가정폭력 및 여성상담에 관한 사무
	11.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에 관한 사무
	12.	국내입양아동 지원에 관한 사무
	13.	요보호아동 시설입소에 관한 사무
	14.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15.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1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17.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18.	결식우려아동 급식에 관한 사무
	19.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사무
	20.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1.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무
	22.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3.	청소년위원회 설치 운영
	24.	청소년 복지시설 신고
	25.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26.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사무
	2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29.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무
	3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무

31.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2.	숙박형등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33.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 등록
34.	드림스타트 종합계획
35.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슈퍼비전 설치·운영
36.	드림스타트 조직화 및 협력·후원기관 발굴 및 관리
37.	분야별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운영
38.	대상아동 인테이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39.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설치·운영
40.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운영·관리
41.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별표 2]

보건소의사무분장표(제11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간석건강 관리센터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	당직근무명령 및 소속기관 직원 복무관리
	3.	예산·회계 관리
	4.	차량 및 청사관리
	5.	의료장비 등 비품 및 소모품 관리
	6.	만성질환사업에 관한 사항
	7.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9.	금연, 영양, 운동 등 건강행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0.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2.	보건통계 및 교육 홍보
	13.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건강관리사업
	14.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에관한사항
	1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7.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8.	치매지원 사업
	19.	다문화가정 건강증진 사업

[별표 2-1]

사업소의사무분장표(제13조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남 동 공 단 지원사업소	1. 남동구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사업
	2.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3. 외국인 근로자 생활체육 지원
	4. 각종 민원서류(민원24) 신청 및 발급
	5.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6.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접수처리
	7. 지방세(납세·독촉·체납)고지서발급
	8.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무
	9.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사무
	10. 악취배출시설 신고(변경) 사무
	1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사무
	12. 특정공사 사전신고(변경) 사무
	13. 도로, 인도, 하수관로(맨홀)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14.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
	15.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
	16. 가로수 유지관리
	17. 소 서무 및 회계업무
	18. 남동공단 재난관리(제설작업, 화재처리) 업무
	19. 남동공단 청소 및 환경미화원 관리
	20.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21. 불법유동광고물 설치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22.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봉사단체 운영
	23.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지급
	24.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단속자료 전송
	25.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장비 관리
	26. 공단내민원업무(건축,건설,환경,기타민원)
남동다문화 사 업 소	1. 남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관리운영
	2. 남동하모니센터 시설관리운영
	3. 남동겨레하나센터 시설관리운영
	4. 남동사할린센터 시설관리운영
	5. 다문화가족관리및지도·지원에관한사항
	6.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다문화가정의날,세계인의날행사운영(각종다문화·외국인관련행사)
9.	결혼중개업관리및운영지도(인·허가,지도감독)
10.	거주외국인지원및민원사무
11.	다문화 작은도서관 운영
12.	남동하모니 합창단 운영
13.	남동건강가족지원센터 시설운영관리
14.	건강가정만들기 지원사무(가족돌봄나눔,가족교육,가족상담,가족문화사업)
15.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상담,교육,생활문화,사례관리사업)
1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7.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
18.	소 사무 및 예산회계업무
19.	센터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
20.	기타 지역사회 연계 후원 사업
21.	센터 내 동향보고 업무

[별표 4]

동의사무분장표(제15조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동주민센터	1.	인사, 감사, 복무, 보안, 문서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동 재산 및 물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당직 및 비상근무
	5.	통·반(장) 관리 및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생단체 등 각종 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구정홍보 및 구 주관 행사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
	9.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
	10.	통계조사(인구주택총조사)
	11.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인감에 관한 사항
	12.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
	13.	납세완납(징수유예, 비과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4.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
	15.	취학 아동에 관한 업무
	16.	민방위대 편입 지원 신고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
	17.	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18.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9.	복지대상자 초기 상담 및 급여신청, 복지증명서 발급
	20.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역복지자원 조사 및 관리
	22.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23.	서비스 연계 업무
	24.	결식아동접수·신청
	25.	동 복지위원회에 관한 사무
	26.	기타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7.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무
	28.	청소년지도위원 추천 및 관리
	29.	매·화장 및 묘지개장 신고처리
	30.	공공근로 신청에 관한 사무
	31.	가정사업계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 처리 등
	32.	산불 예방 및 감시

	33.	도로 점검 및 순찰
	34.	도로 환경 미화원 관리
	35.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36.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37.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38.	구인·구직 알선 등에 관한 사무
	39.	남동구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무
	40.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41.	불법유동광고물 설치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42.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봉사단체 운영
	43.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지급
	44.	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45.	자활사업 연계
	46.	정부양곡 신청 접수
	47.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48.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49.	노인 교통카드·효도카드 발급
	50.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5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접수
	52.	아동급식 신청 접수
	53.	초·중·고 교육비 신청 접수
	54.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접수
	55.	보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접수
	56.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단속자료 전송
	57.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장비 관리
	58.	그 밖에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 및 지시사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 의거 신설 및 변경 부서(기관)장의 직렬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구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변경 및 신설기관 기관장 직렬조정(제10조, 제11조, 제12조)
 - 간석건강관리센터, 남동다문화사업소
- 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사무분장 신설 및 조정
(별표1, 별표2, 별표2-1, 별표4)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규칙 제89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 표]

기관별 · 직급별정원(제2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비고 (행정복지)
총 계		948	591	20	70	18	249	(4)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945	588	20	70	18	249	(4)
	2급 소계	1	1					
	행 정	1	1					
	4급 소계	6	4	1	1			
	행 정	4	3	1				
	기 술	2	1		1			
	5급 소계	62	32	2	7	2	19	
	행 정	17	15	2				
	의 무	3			3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2	2					
	행정·보건	7			1		6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4	6			1	7	
	행정·보건·시설	6					6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의무	1			1			
	6급 소계	235	165	8	17	4	41	

		행 정	108	80	7		2	19	
		세 무	5	5					
		전 산	1	1					
		사 회 복 지	3	3					
		숙 기	1		1				
		공 업	3	3					
		녹 지	1	1					
		보 건	3			3			
		환 경	3	3					
		시 설	14	14					
		방 송 통 신	1	1					
		운 전	5	1		1		3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4	4					
		행정·세무	11	8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8	11			1	6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6			3		3	
		행정·환경	4	3				1	
		행정·시설	12	10				2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사무운영	1					1	
		공업·시설	2	2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5			5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3	2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7급 소계	330	203	7	24	6	90	(4)
	행 정	114	64	3	1	2	44	(4)
	세 무	13	13					
	전 산	3	3					
	사 회 복 지	36	12				24	
	속 기	2		2				
	공 업	6	6					
	농 업	2	2					
	녹 지	5	5					
	해 양 수 산	1	1					
	보 건	8			8			
	의 료 기 술	6			6			
	간 호	5			5			
	환 경	9	9					
	시 설	37	37					
	방 송 통 신	3	3					
	간 호 조 무	1			1			
	운 전	17	7	1		1	8	
	건 축 운 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 기 운 영	1	1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3	9	1		3	
		행정·사회복지	4	2		1	1	
		행정·사서	2	2				
		행정·세무	28	18			10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3	1		2		
		농업·수의	2	2				
		녹지·시설	1	1				
		보건·간호	3			3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8급 소계	265	148	2	16	4	95
		행 정	109	65	1		1	42
		세 무	5	4			1	
		전 산	4	4				
		사 회 복 지	48	15				33
		공 업	8	8				
		농 업	1	1				
		녹 지	5	4			1	
		보 건	9	1		8		
		의 료 기 술	3			3		
		간 호	3			3		
		환 경	5	4			1	
		시 설	21	21				
		방 송 통 신	2	2				
		운 전	9			1		8
		기 계 운 영	2	1	1			
		사 무 운 영	11	6				5
		행정·세무	10	6				4

	행정·사회복지	6	3				3	
	행정·해양수산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보건·간호	1			1			
	9급 소계	45	35		5	1	4	
	행 정	16	11			1	4	
	세 무	5	5					
	전 산	1	1					
	사 회 복 지	7	6			1		
	사 서	2	2					
	농 업	1	1					
	녹 지	3	3					
	보 건	5			5			
	시 설	3	3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방재안전	1	1					
	연구직 계	1	1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15년 하반기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기관별·직급별 정원 일부개정

구 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5급													
행정	18	16	2				17	15	2				△1
행정·사회	4	4					5	4			1		1
행정·보건 ·간호	1			1			2			2			1
행정· 보건업무 ·간호	1			1			0						△1
6급													
행정	108	81	7		1	19	108	80	7		2	19	0
사회	4	4					3	3					△1
행정·사회	17	11				6	18	11			1	6	1
7급													
행정	114	65	3	1	1	44	114	64	3	1	2	44	0
행정·사회	4	3				1	4	2			1	1	0
8급													
행정	109	66	1			42	109	65	1		1	42	0
9급													
사회	7	7					7	6			1		0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훈령 제3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 본청 각 실·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591	
기 획 예산실	일반직	계	17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7	행정6, 행정·세무1
		8급	5	행정4, 전산1
혁신전략 추진단		계	1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사회복지1, 시설1
		7급	4	행정2, 사회복지1, 시설1
		8급	1	행정1
안 전 총괄실	일반직	계	2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3,공업1,행정·시설1,행정·방송통신1,
		7급	10	행정3,공업1,시설1,방송통신2,사무운영1, 전기운영1,공업·시설1,
		8급	3	행정1,시설1,기계운영1
		9급	1	행정·방재안전1
감사실	일반직	계	11	
		5급	1	행정1
		6급	7	행정6, 행정·사회·시설1
		7급	3	행정1, 시설1, 행정·사회·시설1
홍 보 미디어실	일반직	계	20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전산1, 방송통신1, 행정·전산1,
		7급	9	행정2, 전산3,공업1,방송통신1,전화상담운영1, 사무운영1
		8급	5	전산3, 방송통신2
총 무 과	계		30	
	정무직	-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27	
		2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2	행정2
		6급	7	행정7
		7급	8	행정6, 사무운영2
		8급	8	행정8
	별정직	소계	2	
		6급	1	비서요원(수행)
		7급	1	비서요원(기사)
재 무 과	일반직	계	27	
		5급	1	행정1
		6급	7	행정2, 운전1, 기계운영1, 사무운영1, 행정·공업·시설2
		7급	13	행정3,공업2,시설1,운전6,행정·세무1
		8급	6	행정5, 공업1
		9급	0	
세무1과	일반직	계	27	
		5급	1	행정1
		6급	5	세무2, 행정·세무3
		7급	13	세무6, 행정·세무7
		8급	5	세무2, 행정·세무3
		9급	3	세무3
세무2과	일반직	계	27	
		5급	1	행정1
		6급	7	행정1, 세무3, 행정·세무3
		7급	13	세무6, 행정·세무7
		8급	4	세무2, 행정·세무2
		9급	2	세무2
문 화 체 육 과	일반직	계	23	
		5급	1	행정1
		6급	7	행정6, 시설1
		7급	8	행정6(임기제1), 시설1, 녹지·시설1
		8급	3	행정3
		9급	4	행정4(임기제-무대장치, 조명, 음향기사, 학예사)
민 원 봉사과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4	행정3, 사무운영1
		8급	9	행정9
	연구직		1	기록연구사1
토 지 정보과	일반직	계	20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7급	9	행정1, 시설8
		8급	5	시설5
		9급	1	시설1
복 지 정책과	일반직	계	18	
		4급	1	행정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2
		7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8급	7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9급	2	행정2
사 회 보장과	일반직	계	27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6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7급	7	사회복지7
		8급	9	행정1, 사회복지8
		9급	4	사회복지4
노 인 장애인과	일반직	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6	행정3, 행정·사회복지2, 행정·시설1
		7급	5	행정2, 사회복지3
		8급	5	행정2, 사회복지3
		9급	1	사회복지1
가 정 복지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3
		8급	3	행정1, 사회복지1, 보건1
		9급	1	사회복지1

보 육 정책과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사회복지1
평 생 교육과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사서1
		7급	4	행정2, 행정·사서2
		8급	1	행정1
		9급	3	행정1(임기제-사서), 사서2
일 자리 정책과	일반직	계	14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임기제1)
		7급	4	행정4
		8급	3	행정3
기 업 지 원 과	일반직	계	11	
		5급	1	행정·공업1
		6급	5	행정3, 공업1, 공업·시설1
		7급	2	행정1, 공업1
		8급	3	행정1, 공업1, 공업·시설1
생 활 경제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공업·환경1
		6급	5	행정3, 공업1, 행정·공업1
		7급	3	행정3
		8급	5	행정1, 공업4
농수산 개발과	일반직	계	15	
		5급	1	행정·농업·해양수산1
		6급	3	행정·농업1, 행정·해양수산1, 행정·해양수산·시설1
		7급	8	행정1, 농업2, 해양수산1, 시설2, 농업·수의2
		8급	2	농업1, 행정·해양수산1
		9급	1	농업1

청 소 과	일반직	계	17	
		5급	1	행정·환경1
		6급	5	행정4, 행정·환경1
		7급	5	행정2, 환경2, 사무운영1
		8급	4	행정2, 환경2
		9급	2	행정2
환 경 보전과	일반직	계	21	
		5급	1	행정·환경1
		6급	8	행정1, 환경3, 사무운영1, 행정·환경2, 행정·공업·환경1
		7급	8	환경7, 공업·환경1
		8급	4	환경2, 공업·환경1, 행정·세무1
건 설 과	일반직	계	28	
		4급	1	기술1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1, 시설4, 공업·시설1
		7급	12	행정2, 공업1, 시설7, 운전1, 기계운영1
		8급	8	공업2, 시설5, 사무운영1
건 축 과	일반직	계	23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1, 시설3, 행정·시설1
		7급	9	행정1, 시설7, 건축운영1
		8급	6	사회복지1, 시설4, 사무운영1
		9급	2	시설2
도 시 관리과	일반직	계	20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1, 시설3, 행정·시설2
		7급	6	시설5, 행정·세무1
		8급	7	행정1, 시설5, 사무운영1
		9급		
도 시 경관과	일반직	계	15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2, 사무운영1, 행정·시설2
		7급	3	행정2, 사무운영1
		8급	6	행정3, 시설1, 사무운영2

공 원 녹지과	일반직	계	18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4	행정1, 녹지1, 행정·녹지1, 녹지·시설1
		7급	5	녹지5
		8급	5	행정1, 녹지4
		9급	3	녹지3
교 통 행 정 과	일반직	계	16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2, 행정·시설2
		7급	6	행정1, 시설3, 사무운영1, 행정·세무1
		8급	4	행정3, 사무운영1
		9급	1	전산1
자 동 차 관 리 과	일반직	계	23	
		5급	1	행정·공업1
		6급	7	행정3, 사무운영1, 행정·세무2, 행정·공업1
		7급	5	행정3, 세무1, 사무운영1
		8급	8	행정8
		9급	2	행정2

[별표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70	
보 건 행 정 과	일반직	계	25	
		4급	1	기술1
		5급	2	의무1(개방형), 행정·보건·간호1
		6급	5	보건1, 운전1, 보건·의료기술1, 보건·간호1, 행정·보건·간호1
		7급	12	보건2, 의료기술5, 간호2, 간호조무1, 보건·간호2
		8급	3	의료기술2, 운전1
		9급	2	보건2
건 강 증 진 과	일반직	계	18	
		5급	3	의무2(개방형2), 행정·보건·의료기술·의무1
		6급	5	보건·간호3, 의료기술·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급	6	보건2, 의료기술1, 간호3
		8급	3	보건1, 간호2
		9급	1	보건1
식 품 위 생 과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보건1
		6급	5	보건2, 행정·보건3
		7급	5	행정1, 보건4
		8급	7	보건7
		9급	1	보건1
간석건강 관리센터	일반직	계	8	
		5급	1	행정·보건·간호1
		6급	2	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급	1	보건·간호1
		8급	3	의료기술1, 간호1, 보건·간호1
		9급	1	보건1

[별표4]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18	
남동공단 지원사업 소	일반직	계	11	
		5급	1	행정·시설1
		6급	2	행정1, 행정·공업·시설1
		7급	4	행정1, 운전1, 공업·시설2
		8급	3	세무1, 녹지1, 환경1
		9급	1	행정1
남동다문 화사업소	일반직	계	7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8급	1	행정1
		9급	1	사회복지1

【별표 1】 구 본청 각 실·단·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급	현 행		개정(안)	
			정원	직 급 별 내 역	정원	직 급 별 내 역
혁신전략 추진단		계	12		11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5	행정3, 사회복지1, 시설1	5	행정3, 사회복지1, 시설1
		7급	5	행정3, 사회복지1, 시설1	4	행정2, 사회복지1, 시설1
		8급	1	행정1	1	행정1
안 전 총괄실	일반직	계	17		21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5	행정2,공업1,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6	행정3,공업1,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7급	8	행정2,공업1,시설1,방송통신2, 전기운영1,공업·시설1,	10	행정3,공업1,시설1,방송통신2,전 기운영1,사무운영1,공업·시설1,
		8급	2	시설1, 기계운영1	3	행정1, 시설1, 기계운영1
		9급	1	행정·방재안전1	1	행정·방재안전1
총무과	계		34		30	
	정무직	-	1	(구청장)1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31		27	
		2급	1	행정1	1	행정1
		4급	1	행정1	1	행정1
		5급	2	행정2	2	행정2
		6급	8	행정8	7	행정7
		7급	10	행정7, 사무운영3	8	행정6, 사무운영2
		8급	9	행정9	8	행정8
	별정직	소계	2		2	
		6급	1	비서요원(수행)	1	비서요원(수행)
		7급	1	비서요원(기사)	1	비서요원(기사)
문 화 체육과	일반직	계	24		23	
		5급	2	행정2	1	행정1
		6급	7	행정6, 시설1	7	행정6,시설1
		7급	8	행정6(임기제1), 시설1, 녹지·시설1	8	행정6(임기제1), 시설1 녹지·시설1
		8급	3	행정3	3	행정3,
		9급	4	행정4(임기제-무대장치, 조명, 음향기사, 학예사)	4	행정4(임기제-무대장치, 조명, 음향기사, 학예사)

복 지 정책과	일반직	계	22		18	
		4급	1	행정1	1	행정1
		5급	1	행정·사회복지1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3	행정1, 행정·사회복지2
		7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3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8급	8	행정4,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7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2	행정2
사 회 보장과	일반직	계	28		27	
		5급	1	행정·사회복지1	1	행정·사회복지1
		6급	7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3	6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7급	7	사회복지7	7	사회복지7
		8급	9	행정1, 사회복지8	9	행정1, 사회복지8
		9급	4	사회복지4	4	사회복지4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급	조 정 전		조 정 후	
			정원	직 급 별 내 역	정원	직 급 별 내 역
보 건 행정과	일반직	계	25		25	
		4급	1	기술1	1	기술1
		5급	1	행정·보건·간호1	2	행정·보건·간호1, 의무(개방형)1
		6급	5	보건1, 운전1, 보건·의료기술1, 보건·간호1, 행정·보건·간호1	5	보건1, 운전1, 보건·의료기술1, 보건·간호1, 행정·보건·간호1
		7급	12	보건2, 의료기술5, 간호2, 간호조무1, 보건·간호2	12	보건2, 의료기술5, 간호2, 간호조무1, 보건·간호2
		8급	4	의료기술2, 간호1, 운전1	3	의료기술2, 운전1
		9급	2	보건2	2	보건2
간척건강 관리센터	일반직	계	8		8	
		5급	2	행정·보건·의무·간호1, 의무1(개방형)	1	행정·보건·간호1
		6급	2	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2	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급	1	보건·간호1	1	보건·간호1
		8급	2	의료기술1, 보건·간호1	3	의료기술1, 간호1, 보건·간호1
		9급	1	보건1	1	보건1

【별표 4】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분	직 종	직급	현 행		개정(안)	
			정원	직 급 별 내 역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11		18	
남동공단 지원사업 소	일반직	계	11		11	
		5급	1	행정·시설1	1	행정·시설1
		6급	2	행정1, 행정·공업·시설1	2	행정1, 행정·공업·시설1
		7급	4	행정1, 운전1, 공업·시설2	4	행정1, 운전1, 공업·시설2
		8급	3	세무1, 녹지1, 환경1	3	세무1, 녹지1, 환경1
		9급	1	행정1	1	행정1
남동다문 화사업소	일반직	계			7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8급			1	행정1
		9급			1	사회복지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부서(기관) 신설 및 변경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 주요내용

- 본청 및 소속기관 직렬·정원 조정
(별표1, 별표3, 별표4)

예 규

인천광역시남동구하자검사및보수에관한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0월 8일

남동구 예규 제74호

인천광역시남동구하자검사및보수에관한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

인천광역시남동구하자검사및보수에관한업무처리요령을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폐지 이유

- 업무처리요령에 규정된 하자검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관련 제반사항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자검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폐지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507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15. 10 . 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연락골지구 소로3-2호선)
 - 명 칭 : 연락골지구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L=214.0m, B=6.0m, A=1,339m²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2번지 일원
5. 보 상 시 기 : 2015. 4월 ~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 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운연동 42-3번지 외 20
 -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15. 10. 02 - 2015. 10. 16
11. 기타사항
 - ①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032-453-2713)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 (2)

공사명 :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5	운연동	46-7	도	14	14	김영환	운연동 46	남동농업 협동조합	만수동1014-1	근저당권	
16	운연동	46-6	대	13	13	김영환	운연동 46	남동농업 협동조합	만수동1014-1	근저당권	
17	운연동	496-10	구	3	3	국	농림부				
18	운연동	496-8	구	34	34	국	농림부				
19	운연동	46-3	도	5	5	배종식	운연동 46-1				
20	운연동	497-4	도	241	241	국	건설부				
21	운연동	49-16	도	136	136	배윤영	운연동 35				
22	운연동	39-18	대	1	1	배돌쇠	운연동 39-1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	지상권	
23	운연동	40-26	대	39	39	이혜규	운연동 40-5	육완호	양천구신월동331-51 제일빌라1층103호	근저당권	
24	운연동	41-2	대	85	85	이혜규	운연동 40-5	대성신용 협동조합	동구만석동72-11	근저당권	
25	운연동	40-25	대	18	18	최영조	운연동 40-4				
26	운연동	40-24	도	7	7	최영조	운연동 40-4				
27	운연동	47-4	전	9	9	정병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114-8	한국가스공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8-1	지상권	
28	운연동	47-5	전	7	7	정병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114-8	한국가스공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8-1	지상권	
29	운연동	48-1	대	37	37	공	인천광역시				
30	운연동	48-2	도	6	6	배윤영	운연동 35				
소 계				655	655						

용 지 조 서 (2)

공사명 :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5	운연동	46-7	도	14	14	김영환	운연동 46	남동농업 협동조합	만수동1014-1	근저당권	
16	운연동	46-6	대	13	13	김영환	운연동 46	남동농업 협동조합	만수동1014-1	근저당권	
17	운연동	496-10	구	3	3	국	농림부				
18	운연동	496-8	구	34	34	국	농림부				
19	운연동	46-3	도	5	5	배종식	운연동 46-1				
20	운연동	497-4	도	241	241	국	건설부				
21	운연동	49-16	도	136	136	배윤영	운연동 35				
22	운연동	39-18	대	1	1	배돌쇠	운연동 39-1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	지상권	
23	운연동	40-26	대	39	39	이혜규	운연동 40-5	육완호	양천구신월동331-51 제일빌라1층103호	근저당권	
24	운연동	41-2	대	85	85	이혜규	운연동 40-5	대성신용 협동조합	동구만석동72-11	근저당권	
25	운연동	40-25	대	18	18	최영조	운연동 40-4				
26	운연동	40-24	도	7	7	최영조	운연동 40-4				
27	운연동	47-4	전	9	9	정병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114-8	한국가스공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8-1	지상권	
28	운연동	47-5	전	7	7	정병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114-8	한국가스공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8-1	지상권	
29	운연동	48-1	대	37	37	공	인천광역시				
30	운연동	48-2	도	6	6	배윤영	운연동 35				
소 계				655	655						

용 지 조 서 (3)

공사명 :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31	운연동	산 60-13	임	43	43	국	건설부				
32	운연동	495-26	천	1	1	국	건설부				
33	운연동	495-27	천	34	34	국	건설부				
소 계				78	78						
합 계				1,339. 0	1,339. 0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단 위	수량 및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1	운연동	42-3대	담장	적벽돌	m	19.0	최대석	연락골로 33		
			대문	적벽돌 문주2 철재	식	1.0				
			수목	사철나무	주	3.0				
			수목	강나무	주	1.0				
			수목	기타	주	5.0				
			바닥	콘크리트	식	1.0				
2	운연동	40-26대	정화조	콘크리트조	식	1.0	이혜규	운연동 40-5		

3	운연동	43-13대	대문	문주2 스텐레스	0.3	0.3	이해주	운연동 43-3		
			담장	블록	m	0.9				
4	운연동	41-2대	컨테이너	3.0×6.0	식	1.0	이혜규	운연동 40-5		
			창고	조립식판넬	m ²	9.0				
5	운연동	40-25대	창고	조립식판넬	m ²	4.8	최영조	운연동 40-4		
			담장	블록	m	13.4				
			아궁이	벽돌	식	1.0				
			바닥	콘크리트	식	1.0				
6	운연동	43-18대	창고	기와	m ²	55.0	최한호	운연동 43-8		
			수도시설	블록조	m ²	1.3				
			창고	스레트	m ²	4.4				
			창고	스레트	m ²	15.1				
			비닐하우스	비닐,철파이프	m ²	8.8				
7	운연동	44-2임	유실수	호두나무	주	2.0	정병순	서울용산구 청파동 2가 114-8		
8	운연동	47-5전	헨스	철재(H=2.0m)	m	44.0	정병순	서울용산구 청파동 2가 114-8		
			수목	복숭아나무	주	1.0				
			수목	살구나무	주	1.0				
			수목	자두나무	주	4.0				
			수목	감나무	주	1.0				
			수목	마로니에나무	주	4.0				
9	운연동	46-3도	담장	블록	m	5.5	배종식	남동구 연락골로 47(운연동)		
10	운연동	44-2임	수도시설 (양수기)	블럭조 보호시설	식	1.0	김영환	인천 남동구 연락골로 45-4(운연동)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512호

공영주차장 급지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제2공영주차장의 급지가 변경되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변경 급지 시행일: 2015. 10. 20.부터
□ 공영주차장 급지 변경 고시 내용

주차장명	소 재 지	급 지	비 고
소래제2공영주차장	논현동 750-2	1급지	

※공영주차장 급지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032-453-268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제2공영주차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533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215공구 및 216공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215공구 및 216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0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215공구 및 216공구)』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남동구 운연동(인천대공원)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5.10.08. ~ 2015.10.23.
5.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92)
6. 수용재결신청물건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지분)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남동구 장수동	628-3	제	1.0㎡*1/11	한 * *	남동구 장수동 ***	215공구
			1.0㎡*1/11	한 * *	남동구 장수동 ***	
남동구 장수동	628-4	천	64.0㎡*1/11	한 * *	남동구 장수동 ***	
			64.0㎡*1/11	한 * *	남동구 장수동 ***	
남동구 운연동	148-1	답	790㎡*1/4	장 * *	남동구 운연동 ***	216공구

7.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공고 기간내에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535호

공영주차장 급지 선정 및 유료화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도매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규정에 의거 유료화에 따른 급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시행일 : 2015. 11. 1.

2. 급지 및 운영사업자

구분	주차장명	위 치	면수	급지	운영사업자
노외	구월도매시장 공영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9 (구월동)	100	2급지	구월도매시장 상인회 032)202-8982

3. 시간제 주차요금

대 상 주차장	급 지	1회 주차권		전 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30분까지	15분초과마다		
구월도매시장 공영주차장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539호

공 시 송 달 공 고(3차)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소래지구 중2-110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0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래지구 중2-110호선』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23번지 일원

다. 사 업 규 모 : A=1,872.0㎡ 중 136.0㎡, L=110.0m 중 15m, B=15.0m~18.0m

라. 사 업 기 간 : 2016. 12. 31까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공고기간 : 2015. 10. 08. ~ 2015. 10. 23.(15일)

3. 보상시기 : 2015. 10. 30한.

4. 보상대상

- 토 지 : 소래지구 중2-110호선(2필지, 28㎡)

5.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구분	성 명	주소	보상대상토지	사 유	비 고
1	소유자	정**	남동구 논현동 ***	남동구 논현동111-46	주소불명	미등기
2	소유자	유**	남동구 논현동 ***	남동구 논현동 111-320	주소불명	미등기

6. 보상절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개별 보상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7.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5-29호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5년 10월 19일 (월) 11 : 00
- 장 소 : 남동구의회 본회의장 (3층)

2015년 10월 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5-3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맞춤형급여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저소득 구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 이러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예산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 (안 제1조 ~ 제2조)
- 지원내용 및 조사, 결정, 지원방법에 관하여 정함 (안 제3조 ~ 제6조)
-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정함 (안 제7조 ~ 제8조)
- 시행규칙 관련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453-5013, 5030 /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① 지원내용은 생계비로 하며,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안 제3조)
- ② 보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된 2015. 7월부터 3개월 동안 대상자를 실측하여 연간 통계를 작성하고, 추계기간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으로 한다.
- ② 2017년부터는 매년 변경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을 반영하여 추계한다.

나. 추계 결과

조례 시행에 따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요액은 2016년 4억7천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25억4천7백만원으로 추정된다.

(단위 : 천원)

년도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예산소요액	470,400	489,216	508,785	529,137	550,303	2,547,841

다. 재원조달 방안

구비 자체재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남동구의회 임춘원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 △△△△ △△△△							
세 출		470,400	489,216	508,785	529,137	550,303	2,547,84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생계비		470,400	489,216	508,785	529,137	550,303	2,547,841
재원 조달		470,400	489,216	508,785	529,137	550,303	2,547,841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조정교부금						
	소 계	470,400	489,216	508,785	529,137	550,303	2,547,841
	지방세	470,400	489,216	508,785	529,137	550,303	2,547,841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 례 안

의안 번호	1755
----------	------

발의연월일 : 2015. 10. 05 .

발 의 자 : 임춘원 의원

찬 성 자 : 민창기의원 외 5인

☐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맞춤형급여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저소득 구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 이러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예산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함 (안 제1조 ~ 제2조)
- 지원내용 및 조사, 결정, 지원방법에 관하여 정함 (안 제3조 ~ 제6조)
-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정함 (안 제7조 ~ 제8조)
- 시행규칙 관련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의 범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기간이 남동구에 6개월 이상인 자 중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자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은 생계비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이 조례에 의한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신청은 법에 의한 급여신청과 병행하여 신청한다.

제5조(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법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신청에 대한 지원 실시여부를 지원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4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지원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전으로 지급한다.

② 지원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원하며, 매월 가구단위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제7조 제1호에 의한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보장비용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01.01부터 시행한다.

□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30.>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0.>[전문개정 2012.2.1.]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도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
 5.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이 입소 탈락자나 퇴소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6.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63호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처분예정사항(직권말소)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10. 20.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5. 10. 05. ~ 2015. 10. 19.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 음식점	1998-0199436	캐치큐 (간석점)	양*선	남동구 경인로 611 (간석동)	사업자등록 말소	2002.11.14	2015.10.20.
	1998-0199252	찬스	홍*희	남동구 간석동 302번지 7호		2004.04.10	
	2008-0199698	에이스	한*정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22 (간석동)		2013.12.31	
	1992-0199303	상원	추*자	남동구예술로172번길 41 (구월동)		2012.09.30	
	2003-0200086	명인만두 구월점	김*주	남동구 구월로 280 (구월동)		2014.03.04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5. 10. 19.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2015. 10. 0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64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처분예정사항(직권말소)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10. 21.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5. 10. 06. ~ 2015. 10. 20.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 음식점	2001-0199337	김이랑밥이랑	최*희	논곡로91번길 5-7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05.10.	2015.10.21.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2015. 10. 0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66호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처분예정사항(직권말소)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10. 21.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5. 10. 07. ~ 2015. 10. 20. (13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기타식품 판매업	2013- 0199228	한국유통	황*태	장승남로33번길 9,지하101호 (만수동)	사업자등록 말소	2013.12.31.	2015.10.21.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5. 10. 20.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될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4

2015. 10. 0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